

서울고등법원 2017. 9. 21 선고 2017나20010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청구]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7. 9. 21 선고 2017나2001033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4가합5331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총중회

피고, 항소인 1. J

2. Y

3. Z

4. AA

5. AB

6. AC

변론 종결 2017. 8. 24.

판결 선고 2017. 9. 21.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4가합5331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별지 제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J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부분(주문 제1의 다항) 및 별지 제4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부분(주문 제1의 라항)을 각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피고 Y, Z, AA, AB, AC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 의사표시와 양도 통지를 명한 부분(주문 제2항 피고별 공탁금 표 중 위 피고들 해당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Y, Z, AA, AB, AC는 원고에게 별지 제6 목록 제4 공탁 기재 공탁금 중 각 1,191,675원에 관하여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인천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위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1. 원고에게, ① 별지 제1 목록 기재 인천 서구 B 답 2,194㎡ 중, 피고 J는 1/11 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각 2/143 지분에 관하여, ② 별지 제2 목록 기재 인천 서구 C 답 246㎡ 및 D답 12㎡ 중, 피고 J는 1/11 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각 2/143 지분에 관하여, ③ 피고 J는 별지 제3 목록 기재 인천 서구 E답 92㎡ 중 1/11 지분에 관하여, ④ 별지 제4 목록 기재 인천 서구 I 답 183㎡ 중, 피고 J는 1/11 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각 2/143 지분에 관하여, ⑤ 피고 J는 별지 제5 목록 기재 인천 서구 K전 307㎡ 중 1/10지분에 관하여 각 2015. 4. 16.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가 해지일자에 관하여 소장에서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로, 2015. 12.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는 일부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4. 5. 27.'로 특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들별로 소장 부분 송달일이 다르고, 최종송달일은 피고 AC에 관한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5. 4. 16.이므로, 제1심은 원고가 위 2015. 4. 16.을 해지일로 구하는 것으로 선택하였다.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를 따로 다투지

아니하므로, 위 일자를 해지일로 정리한다).

2. 원고에게, 피고 J는 별지 제6 목록 제1 공탁 기재 공탁금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X와 공동하여 별지 제6 목록 제4 공탁 기재 공탁금에 관하여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인천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위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원고가 제1심에서 제1심 공동피고 AS 등 28인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위 AS에 대한 부분은 2015. 10. 15. 강제조정기 성립되었고, 나머지 피고들 27인에 대한 부분은 원고 전부승소(청구인용) 판결이 선고되었다. 항소심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L 7대손인 'AM'을 공동시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별지 제1 내지 제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1. 3. 14.경 피고 J, 제1심 공동피고 AS, 망 BG, 망 AP, 망 AO, 망 AQ, BH, BI, BJ, BK 및 망 AR(이하 이들을 통틀어 '피고 J 등 11인'이라 한다) 명의로 각 1/11 지분에 관하여 1981. 3.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제5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제1 내지 제5 목록 기재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5. 6. 18.경 피고 J, BE, BL, BG, BM, BN (1985. 10. 2. 제1심 공동피고 AS으로 정정되었다), BO, BI, BP 및 BQ 명의로 각 1/1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1994년경 인천지방법원에 피고 J, 망 AQ(피고 J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피상속인) 등 17인을 상대로 '경기 김포군 BR 전 307m²(이하 '이 사건 BR 토지'라 한다), BS 답 2,727m²(이하

'이 사건 BS 토지'라 한다) 등 9필지'에 관하여 1992. 1. 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95. 2. 23.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위 법원 94가합19552 사건,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선행소송의 목적 부동산 중 이 사건 BR 토지는 이 사건 별지 제5 목록 기재 부동산과 동일하다(행정구역만 변경되었다). 이 사건 선행소송의 목적 부동산 중 이 사건 BS 토지는 '이 사건 별지 제1 내지 제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고,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바.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제3, 제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J 등 11인의 각 공유지분에 대하여 2008. 2. 19.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기간 동안 공공용지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인천광역시 명의로 직접 또는 상속인들을 거쳐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사. 인천광역시는 2014. 11.경 '보상금을 받을 자의 보상금 수령 거부'를 이유로 하여 공공용지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피고 J를 피공탁자로 하여 별지 제6 목록 제1 공탁을 (별지 제3, 제4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J의 1/11 지분 부분), 망 AQ의 상속인들(제1심 공동피고 X, 피고 Y, Z, AA, AB, AC)을 피공탁자로 하여 별지 제6 목록 제4 공탁을(별지 제4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공탁자들 합계 1/11 지분 부분) 각 마쳤다.

아. 한편, ① 피고 J가 2007. 10.경 자신의 사위 AT과 공모하여, 별지 제1,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1/11 지분에 대하여 AT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한 사실, ② 제1심 공동피고 AS이 2007. 10.경 AT과 공모하여 별지 제1,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1/11 지분에 대하여 AT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한 사실, ③ 위 AS이 원고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1,000만 원을 2008. 12.경부터 2009. 7.경까지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이에 관하여 피고 J와 위 AS은 2012.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위 법원 2012고단8489 사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2. 9. 25. 위 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위 2012노2951 사건)]. 또한 망 AP, 망 AO, 망 AQ, 망 AR의 각 상속인들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 원고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자. 이에 원고는 2012. 7. 8. 임시종중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J와 제1심 공동피고 AS, 망 AP, 망 AO, 망 AQ, 망 AR 및 그 상속인들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위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환수하기로 의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4, 5, 6,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제4호증의 1 내지 3, 제6호증의 1, 2, 4 내지 7,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등기부등본 검색 결과 포함)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요지

1) 원고는 'AM'을 공동선조로 하는 본래 의미의 종중이 아니다. 원고는 'AM'의 후손 중 AU, BC의 후손으로서 김포시에 거주하는 일부 혈족들의 모임인 종중유사단체에 불과하다. 원고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2) 원고가 'AM'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라면, 총유재산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총회를 거쳐야 한다. 원고가 그 종원 범위에 포함되는 AU, BC, AW, AX, AY, AZ, BT, BU, BA, BB, BV, BW[을 제2호증의 1의 기재를 참조하면, AW는 3명의 동명이인(BU 2인, BV 1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의 후손들에게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한 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제5면 제4행부터 제7면 제12행까지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면 제9행의 "이 사건 부동산은"부터 제15행의 "다투지는 아니한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에 의해 관리되던 중 1981년경 AM 후손들 중 BX의 후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가 1994년 피고 J, 망 AQ(피고 J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피상속인) 등 17인을 상대로 원고가 종중임을 전제로 이 사건 선행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 J와 망 AQ를 포함하여 위 선행소송 피고들 모두 원고가 종중임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제1심판결 제6면 제16행의 "BD"을 "BX"으로 고쳐 쓴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요지

1)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이다. 별지 제1 내지 제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J의 1/11 지분, 별지 제5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J의 1/10 지분 및 별지 제1, 제2 제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망 AQ(피고 J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피상속인)의 1/11 지분에 관한 각 공유지분등기는 모두 원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마쳐진 것이다. 원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위 각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이를 반환받기로 하는 결의를 하고,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 J는 자신 명의의 위 각 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자신들 명의의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의무가 있다. 또한 별지 제3, 제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인천광역시에 수용되었고, 인천광역시가 별지 제6 목록 기재와 같이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피고 J는 별지 제6 목록 제1 공탁 기재 공탁금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별지 제6 목록 제4 기재 공탁금에 관하여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이러한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고, 원고와 피고들(피고 J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피상속인 망 AQ 포함) 사이에는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명의신탁약정 존재 및 그 해지 여부 다음 기재 각 사실 또는 사정은, 기초사실 설명과 위 2. 나.항에서 인용한 본안전항변에 관한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이러한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및 망 AQ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가 1992. 1. 1. 이를 해지한 후 이 사건 선행소송 판결을 받았으나,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고가 자신 명의로 등기를 마칠 수 없어, 피고 J 및 망 AQ와 다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5. 4. 16. 위 명의신탁이 다시 해지되었다고 봄이 정당하다.

① 원고가 1994년경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피고 J를 상대로 이 사건 BS 답 2,727m²(이 사건 별지 제1 내지 제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 및 행정구역 변경되었다) 중 피고 J의 1/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J와 망 AQ를 상대로 이 사건 BR 전 307m²(이 사건 별지 제5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행정구역 변경되었다) 중 위 피고들의 각 1/10 지분에 관하여 각 1992. 1. 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다. 피고 J와 망 AQ는 원고의 주장사실(원고가 종종이고, 목적 부동산을 자신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1995. 2. 23.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당시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 다시 피고 J 등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2012. 7. 8. 임시종중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J와 망 AQ 및 그 상속인들(피고 J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위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환수하기로 의결하였다.

④ 원고가 2012. 7. 8. 위 임시종중총회를 개최한 후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위 종중총회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되자, 종원 명부를 다시 확정하여 2016. 1. 17. 확인되는 총 240명가량의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한 뒤 위 임시종중총회에 관한 추인결의를 하였다.

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로써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은 피고 AC에 대한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2015. 4. 16.이다.

2) 명의신탁약정 해지에 따른 피고들의 의무 가) 피고들은 명의신탁약정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각 소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해당 소유지분에 관한 수용 등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인 경우 그에 해당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이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에 관하여

(1) 별지 제1, 제2, 제5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

(가) 원고와 피고 J, 망 AQ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해지되었음은 앞서 설명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 J는 별지 제1,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1/11 지분, 별지 제5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1/10 지분에 관하여, ② 망 AQ의 상속인들인 나머지 피고들은 별지 제1,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들의 각 2/143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2015. 4. 16.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농지라는 이유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인지 예비적으로 판단한다.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농지법 제8조 제4항),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므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비록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해당 부동산이 농지임을 이유로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내세워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9871 판결 등 참조). 또한 원고가 피고 J, 망 AQ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를 명의신탁한 1981년경 및 1985년경 시행되던 구 농지개혁법(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96. 1. 1.자로 폐지된 법)에 의하면,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지만, 위 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종중이 기존의 위토가 없는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분묘 1위당 600평 이내의 농지를 위토로서 새로이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취지가 기재된 농지매매증명서를 첨부하여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제한된 목적과 규모의 범위 내에서는 종중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고, 원고가 장차 농지취득자격을 갖추어 그에 관한 증명을 발급받거나 해당 부동산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14886 판결 참조). 더구나 부동산실명법(약칭임) 제8조 제1항이 종중이 하는 명의신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그 대상에서 농지를 배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별지 제1, 제2, 제5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J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별지 제1,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나머지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라거나 그 등기원인인 원고의 명의신탁해지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농지라는 이유로 피고들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별지 제3, 제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

(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수용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5461 판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두43387 판결 등 참조).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목적물인 부동산이 제3자에게 수용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56910 판결 등 참조).

(나) 인천광역시가 2014. 11.경 피고 J를 피공탁자로 하여 별지 제6 목록 제1 공탁을(별지 제3, 제4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J의 1/11 지분 부분), 망 AQ의 상속인들(제1심 공동피고 X, 피고 Y, Z, AA, AB, AC)을 피공탁자로 하여 별지 제6 목록 제4 공탁을(별지 제4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공탁자들 합계 1/11 지분 부분) 각 마친 사실은 앞서 설명하였다. 따라서 별지 제3, 제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J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별지 제4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나머지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각 이행불능이 되었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원고는 이 부분에 관하여 아래 3)항과 같이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 및 통지를 별도로 구하고 있다).

3)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 의사표시 및 통지 청구에 관하여 위 2)나) (2)항 설명과 같이, 별지 제3, 제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J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별지 제4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나머지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모두 이행불능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J는 별지 제6 목록 제1 공탁 기재 공탁금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별지 제6 목록 제4 기재 공탁금 중 각 상속분인 2/13 지분 상당액인 각 1,191,675원(= 7,745,890원 × 2/13,

원 미만 버림)에 관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이러한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1) 원고에게, ①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및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J는 1/11 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각 2/143 지분에 관하여, ② 피고 J는 별지 제5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각 2015. 4. 16.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① 피고 J는 원고에게 별지 제6 목록 제1 공탁 기재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인천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②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6 목록 제4 공탁 기재 공탁금 중 각 1,191,675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인천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위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정당하지 아니하다.

제1심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별지 제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J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부분(주문 제1의 다항) 및 별지 제4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부분(주문 제1의 라항)을 각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Y, Z, AA, AB, AC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 의사표시와 양도 통지를 명한 부분(주문 제2항 피고별 공탁금 표 중 위 피고들 해당 부분)을 변경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종구

판사양시훈

판사박옥희

별지